

# 방 송 통 신 위 원 회

## 심 의 · 의 결

안건번호 제2023 - 08 - 020호

안 건 명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자

의 결 일 2023. 3. 21.

### 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가. 금 액 : 1,500,000원
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# 이 유

#### I. 기초 사실

##### 가. 피심인의 일반현황

피심인은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위치정보법'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,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등록 / 신고 번호	사업자	대표자	사업 내용

## II. 실태점검 결과

### 1. 점검 배경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('21.9월 ~ '22.7월)을 진행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피심인의 행위사실

피심인은 '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'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방송통신위원회는 '22년 12월 15일에 '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2년 12월 23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 III. 위법성 판단

### 1. 관련 법 규정

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'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'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‘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’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이 이용약관에 ‘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’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IV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 1. 기준 금액

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적용한다.

<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 과태료 부과 기준 >

위 반 조 항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 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	위치정보법 제43조 제2항제5호	300	600	1,000

### 2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[별표5]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 결과를 시정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한다.

### 3. 최종 부과금액

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1,500,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V. 결론

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3년 3월 21일

위원장	한 상 혁	
부위원장	안 형 환	
위원	김 현	
위원	김 효 재	
위원	김 창 룡	